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 3997 (2015.10.28)

2. 위 근거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공고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가. 항암요법 개정내역

1) 신설: 2항목

구분	개 정 사 항
항암요법 급여기준	○ 갑상선암에 'vandetanib' 단독요법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	○ 전립선암에 'degarelix' 단독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2) 변경: 1항목

구분	개 정 사 항
항구토제 급여기준	○ 항구토제 투여기준 1.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. 사항 중 palonosetron(품명: 알록시주) 급여 인정기준 변경

붙임 : 주요공고개정 내역 및 공고전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32 ( 2015.11.03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dm@kha.or.kr](mailto:ldm@kha.or.kr)